

문서번호 :

[]요양비
[]장례비 사전지급결정통보
[]수리비

사건번호	배심	년	제	호
신 청 인			대 리 인	

1. 위 사건의 ([]요양비 []장례비 []수리비) 사전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사전지급결정서 등본과 같이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2. 신청인에게는 이미 사전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부하고 아래 서류를 갖추어 귀 기관에 지급 청구하도록 하였으니, 지급청구 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정기간(「국가배상법」 제15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4조 참조) 내에 지급하시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가. 신청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

- 1) (요양비·장례비·수리비)사전지급청구서 2부
- 2) 사전지급결정서 정본 1부
- 3) 신청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인 경우: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각 2부

나.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

- 1) 가목 1) 및 2)에 따른 서류
- 2)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2부
- 3)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2부
- 4)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소명하는 자료 2부

첨부: 사전지급결정서 등본 1부. 끝.

년 월 일

○○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

청인

(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) 귀하